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안번호	
------	--

제출일자 : 1998. 9. 3.

제 출 자 : 거 창 군 수

■ 수정이유

- 정부의 범국가적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방행정조직의 기구·인력 감축으로 작고 효율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고자
 - 행정기구중 기능쇠퇴·유사중복기구 등을 통합하여 대과주의를 실현하고, 의사결정 단계 축소를 위해 「계」제도를 폐지하는 등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위하여 '98. 8. 22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7호)을 제출하였으나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 15875호, '98. 8. 31) 개정에 따른 "경상남도의 기구정원규정등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에 따라
 - 부칙으로 개정코자하는 다른 조례에 명시된 "계장"의 명칭을 "○○담당"에서 "○○담당 주사"로 정비·통일을 기하기 위함.

■ 수정 주요골자

- 부칙으로 개정하는 다른 조례 개정사항중 "계장"의 명칭을 "○○담당 주사"로 수정
 - "○○계장" → "○○담당" → "○○담당 주사"

■ 수정근거

경남도 행정 12200 ~ 614 ('98. 8. 31) 기구정원규정등 개정에 따른 시행지침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중 “문화공보실” 다음에 “종합민원실”을 삽입하고, “재무과” 다음에 “종합민원실”을 삭제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 개정) ①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항중 “기획계장이”를 “기획담당 주사가”로 한다.

② 거창군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행정계장이”를 “행정담당 주사가”로 한다.

③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사회진흥과장”을 “문화공보실장”으로 한다.

④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중 “청소년업무 담당계장으로”를 “청소년담당 주사로” 한다.

⑤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지적, 도시과장을 “종합민원실장, 도시환경과장”으로 한다.

⑥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부동산중개업무담당계장이”을 “부동산중개담당 주사가”로 한다.

⑦ 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중 “사회보장계장으로”를 “사회보장담당 주사로” 한다.

⑧ 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중 “환경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⑨ 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지역경제계장으로”를 “지역경제담당 주사로” 한다.

⑩ 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교통행정계장으로”를 “교통행정담당 주사로” 한다.

⑪ 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산업경제계장이”를 “산업경제담당 주사가”로 한다.

⑫ 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중 “도시과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하고, 제8조 제2항중 “공원업무 담당계장이”를 “공원담당 주사가”로 한다.

⑬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온천업무 담당계장이”를 “온천담당 주사가”로 한다.

⑭ 거창군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2항중 “주택계장이”를 “주택담당 주사가”로 하고, “도시과장”을 “도시환경과장”으로 한다.

⑮ 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가족보건계장이”를 “가족보건담당 주사가”로 한다.

⑯ 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중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를 “둔다”로 한다.

⑰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거창군사무의 읍·면 위임사무] 중 사회진흥과란 및 환경위생과란을 삭제하며, 보건소란 다음에 수도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소관별란의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도시과”를 “도시환경과”로 하며, 내무과란의 제13호를 삭제하고 종합민원실란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산업과란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도시환경과란에 제12호를 삭제하고, 건설과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도시환경과란에 제12호 내지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 관 별	위임 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수도사업소	1. 간이상수도의 관리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종합민원실	2.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도내 주소변경 등록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산 업 과	3.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에의한 융자금 상환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제8조
건 설 과	5. 주민부담금 30%이상인 공사 집행	
도시환경과	12.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운영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9조
	13. 특별청소지역내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6조
	14. 분노 불법투기 단속	수질환경보호법 제29조
	15. 폐기물 투기 지도·단속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30조 동시행규칙 제13조
	16.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17. 분노정화조 설치신고 및 준 공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 제11조, 건축법 제71조 동시행규칙 제117조
	18.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수정안 대비표(본문)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 (실과의 설치) 거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u>지적과</u>,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둔다.</p>	<p>제2조 (실·과의 설치) 거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재무과, <u>종합민원실</u>,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p>	<p>제2조 (실·과의 설치) 거창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u>종합민원실</u>, 내무과, 재무과, (삭제) 사회복지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환경과를 둔다.</p>

수정안 대비표(부칙)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 (간사)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u>기획계장</u> 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 (간사)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u>기획담당</u> 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거창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 (간사) ② 간사는 기획감사실 <u>기획담당 주사</u> 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한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거창군민상조례) 제12조 ②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u>행정계장</u> 이 된다.	(거창군민상조례) 제12조 ②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u>행정담당</u> 이 된다.	(거창군민상조례) 제12조 ② 간사는 내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u>행정담당 주사</u> 가 된다.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② 간사는 <u>사회진흥과장</u> 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거창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 ② 간사는 <u>문화공보실장</u> 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안과 같음)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 ② 간사는 <u>청소년업무 담당계장</u> 으로 한다.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 ② 간사는 <u>청소년업무 담당</u> 으로 한다.	(거창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 ② 간사는 <u>청소년담당 주사</u> 로 한다.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 ③위원중 재무지적, <u>도시과장</u> 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거창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 ③위원중 재무 <u>종합민원실장</u> , <u>도시환경과장</u> 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밖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안과 같음)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u>부동산중개업무 담당계장</u> 이 된다.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u>부동산중개업무 담당</u> 이 된다.	(거창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u>부동산중개담당 주사</u> 가 된다.

현행	개정안	수정안
<p>(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u>사회보장계장</u>으로 한다.</p>	<p>(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u>사회보장담당</u>으로 한다.</p>	<p>(거창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 (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료보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군의 <u>사회보장담당 주사</u>로 한다.</p>
<p>(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33조 (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 <u>환경사업소장</u>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거창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33조 (권한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군수의 권한중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장, <u>수도사업소장</u>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개정안과 같음)</p>
<p>(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출납공무원은 <u>지역경제계장</u>으로 한다.</p>	<p>(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출납공무원은 <u>지역경제담당</u>으로 한다.</p>	<p>(거창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출납공무원은 <u>지역경제담당 주사</u>로 한다.</p>
<p>(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u>교통행정계장</u>으로 한다.</p>	<p>(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u>교통행정담당</u>으로 한다.</p>	<p>(거창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 (회계공무원지정) 이 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지역경제과장, 자금출납공무원은 <u>교통행정담당 주사</u>로 한다.</p>
<p>(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u>산업경제계장</u>이 된다.</p>	<p>(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u>산업경제담당</u>이 된다.</p>	<p>(거창군양수기대부조례) 제4조 (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 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u>산업경제담당 주사</u>가 된다.</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구성) ③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u>도시과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8조 (간사 등) ② 간사는 <u>공원업무 담당계장</u>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p>	<p>(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제2조 (구성) ③ 기획감사실장, 내무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u>도시환경과장</u>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p> <p>제8조 (간사 등) ② 간사는 <u>공원업무 담당</u>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p>	<p>(거창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 (간사 등) ② 간사는 <u>공원담당 주사</u>가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p>
<p>(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온천업무 담당계장</u>이 된다.</p>	<p>(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온천업무 담당</u>이 된다.</p>	<p>(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u>온천담당 주사</u>가 된다.</p>
<p>(거창군건축조례) 제9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u>주택계장</u>이 되며 서기는 <u>도시과장</u>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p>	<p>(거창군건축조례) 제9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u>주택담당</u>이 되며 서기는 <u>도시환경과장</u>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p>	<p>(거창군건축조례) 제9조(간사 및 서기) ② 간사는 <u>주택담당주사</u>가 되며 서기는 <u>도시환경과장</u>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p>
<p>(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구성)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u>가족보건계장</u>이 된다.</p>	<p>(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구성)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u>가족보건담당</u>이 된다.</p>	<p>(거창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 (구성) ④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u>가족보건담당 주사</u>가 된다.</p>
<p>(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① 사무소에 <u>소장</u>을 두며, <u>소장은 지방행정주사로</u> 보한다.</p>	<p>(거창군수승대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 제4조 ① 사무소에 <u>소장</u>을 둔다.</p>	<p>(개정안과 같음)</p>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

[별표 1]

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사무

소 관 별		위임사무명	근거 및 적용법률
현 행	개 정 안		
도시환경과	수도사업소	1. 간이상수도의 관리	거창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 제4조 내지 제8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지 적 과	종합민원실	1. 토지가격 확인원 발급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
내 무 과	“	2. 자동차 주소 변경등록 (도내 주소변경 등록에 한함)	자동차관리법 제11조
사회진흥과	산 업 과	3.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조례에의한 융자금 상환	거창군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 관리조례 제8조
사회진흥과	건 설 과	5. 주민 부담금 30%이상인 공사 집행	
환경위생과	도시환경과	12. 청소인부 및 청소차량 관리·운영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 9조
“	“	13. 특별청소지역내 쓰레기 수집 운반 처리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 6조
“	“	14. 분뇨 불법투기 단속	수질환경보호법 제29조
“	“	15. 폐기물 투기 지도.단속	거창군일반폐기물관리예관한조례 제 30조 동 시행규칙 제13조
“	“	16. 공중화장실 관리.운영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률 제16조
“	“	17. 분뇨정화조 설치 및 준공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률 제10조, 제11조, 건축법71조 및 동시행규칙제 제117조
“	“	18. 간이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신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률 제33조, 동법 시행규칙 제73조